

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08 ~ 28
----------	-----------

제출연월일	2008. 6. 30.
제 출 자	거창군수

1. 개정이유

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따라 유사기구 통폐합 및 조정으로 기능중심으로 행정조직을 개편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종류별 정원 감원(안 별표) : 678명 → 650명(△28명)

- (1) 일반직 감원 : 4급 1명, 6급 3명, 7급 5명, 8급 4명, 9급 4명
- (2) 지도직 감원 : 4명
- (3) 기능직 감원 : 6급 1명, 7급 1명, 9급 1명, 10급 3명
- (4) 별정직 감원 : 6~7급 1명(16명→15명)

나. 기관별 정원 변동(안 별표)

- (1) 본청 : 269명 → 275명(증6명)
- (2) 의회 : 14명 → 14명(변동 없음)
- (3) 농업기술센터 : 61명 → 57명(△4명)
- (4) 보건소 : 72명 → 66명(△6명)
- (5) 사업소 : 59명 → 50명(△9명)
- (6) 읍 : 45명 → 41명(△4명)
- (7) 면 : 158명 → 147명(△11명)

다. 농업기술센터소장 직급조정 : 4급 → 5급

라. 한시정원 삭제(안 부칙 제2항)

- (1) 혁신분권업무 : 3명(6급1명, 7급1명, 8급1명)
- (2) 복식부기업무 : 2명(6급1명, 8급1명)
- (3) 일제강점하피해조사업무 : 1명(7급1명)

마. 별표 :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
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30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그 밖에

- (1)신구조문대비표 : 붙임
- (2)입법예고(2008. 6. 23.~ 7. 3.)결과 : 특기할 사항 없음
- (3)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거창군 조례 제 호

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678명”을 “650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제1호 중 “664명”을 “636명”으로 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승인된 한시정원은 폐지한다.

② 이 조례의 개정으로 정원을 초과한 현원은 그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신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2조(정원의 총수) 거창군 정원의 총수는 <u>678명</u>이며,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집행기관의 정원 : <u>664명</u></p> <p>2. (생략)</p> <p>부칙(개정 2008. 5. 30. 조례 제1886호)</p> <p>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</p> <p>②(한시정원) 집행기관의 한시정원 6명(6급2명, 7급2명, 8급2명)중 3명(혁신분권 업무 : 6급1명, 7급1명, 8급1명)은 2008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, 3명(복식부기업무 : 6급1명, 8급1명, 일제강점하피해조사 : 7급1명)은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</p>	<p>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 ---<u>650명</u>-----.</p> <p>1. -----<u>636명</u>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제2조(경과조치)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승인된 한시정원은 폐지한다.</p> <p>② 이 조례의 개정으로 정원을 초과한 현원은 그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</p>

[별표]

직급별 기관별 지방공무원 정원표

기관별 직급별		총계	본청	의회	직속기관			사업소	읍	면
					소계	기술센터	보건소			
총 계		650 (678)	275 (269)	14	123 (133)	57 (61)	66 (72)	50 (59)	41 (45)	147 (158)
정 무 직		1	1							
일반직	소계	515 (532)	226 (221)	8	73 (77)	24 (23)	49 (54)	34 (39)	35 (40)	139 (147)
	4급	1 (2)	1	0	0 (1)	0 (1)	0	0	0	0
	4~5급	3	2	0	1	0	1	0	0	0
	5급	31	10 (11)	3	3 (2)	2 (1)	1	3	1	11
	6급	139 (142)	61 (63)	3	10	5	5	9 (10)	12	44
	7급	159 (164)	82 (81)	2	23 (24)	10	13 (14)	12	11 (12)	29 (33)
	8급	123 (127)	52 (50)	0	33 (35)	5	28 (30)	8 (8)	7 (10)	23 (24)
	9급	59 (63)	18 (13)	0	3 (4)	2 (1)	1 (3)	2 (6)	4 (5)	32 (35)
별정직	소계	16 (17)	1	0	15 (16)	0	15 (16)	0	0	0
	6급	1	1	0	0		0			
	6~7급	15 (16)	0	0	15 (16)		15 (16)	0		
연구사	4	1	0	2	2		1			
지도직	소계	28 (32)	0	0	28 (32)	28 (32)	0	0	0	0
	지도관	2	0	0	2	2				
	지도사	26 (30)	0	0	26 (30)	26 (30)				
기능직	소계	86 (92)	46 (45)	6	5 (6)	3 (4)	2	15 (19)	6 (5)	8 (11)
	6급	2 (3)	1	0	1	0	1	0 (1)	0	0
	7급	8 (9)	3	1	1 (2)	1	0 (1)	3	0	0
	8급	14	4 (2)	2	0	0	0	2 (3)	1	5 (6)
	9급	27 (28)	19	1	0 (1)	0 (1)	0	4 (5)	2 (1)	1
	10급	35 (38)	19 (20)	2	3 (2)	2	1 (0)	6 (7)	3 (3)	2 (4)